

창업지원 휴직제도

1. 추진배경

재직중 창업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분야에 대한 능력개발 및 경력전환 체험기회 부여

2. 주요내용

휴직기간	○ 최소 1년6개월 ~ 최대 3년6개월 - 의무휴직기간: 1년6개월 - 본인 희망에 의해 최장 2년간 추가 휴직 가능(6개월 단위)
보수기준	○ 유급: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간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%만 지급 ○ 무급: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 이후의 기간
대상분야	제한 없음(개인이 희망한 모든 창업분야)
지원자격	○ 명예퇴직 자격이 되는 조합원 중 희망자 -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근무자 - 교육파견 복귀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※ 구KTF 조합원은 KTF의 재직기간(경력포함)과 KT재직기간의 합을 적용
지원내역	○ 창업교육 및 컨설팅 희망시 지원 ○ 희망시 KT사옥 유휴상면 임대 지원(유상) ○ 휴직자 창업지원을 위한 원데이 워크샵 실시(필수)
신청절차	○ 창업지원제도 시행 공고 및 희망자 지원 ○ 창업신청 : 희망자가 신청서류 작성 후 시스템 등록 ▪ 등록 : BIT ERP - HR - 개인업무 - 인사정보 - 휴직/퇴직신청 - 창업지원휴직신청 ▪ 제출서류 : 창업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

심의 및 선정	○ 창업심의 :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(예심의, 본심의) - 예심의(1차) : 소속기관 부서장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- 본심의(2차) : 인재경영실 인사담당 주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○ 심의기준 - 예심의(1차) : 사업계획의 적정성, 창업가정신 등을 평가하여 1~4등급 부여 (2등급 이상자에 한하여 통과처리, 본심의 상정) - 본심의(2차) : 본심의 상정자를 대상으로 적합/부적합 심의하여 합의 또는 과반수 이상 찬성 시 확정 처리 ※ 단, 창업분야가 kt관련(그룹사 포함)일 경우,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본심의시 적합/부적합 최종결정
협약체결 증빙서류	○ 협약서 체결 - 창업자로 선정된 후 2주 이내 - 체결내용 : 휴직기간, 의무와 책임 한계, 인사처리 등 ○ 증빙서류 제출(의무사항) - 휴직발령 후 1년 이내 :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- 휴직발령 후 1년 이후 : 반기 익월(휴직기간) 진행상태 통보(소속기관 인사담당)
운영	○ 의무 휴직기간(최초 1년6개월) 중에는 복직 불가 ○ 추가 휴직기간중 복귀 희망시 복귀희망일 1개월 전 복귀희망서 제출 ○ 1년6개월 이내의 추가 휴직기간을 신청한 직원이 추가연장(6개월단위)을 희망할 경우 휴직만료일 1개월 전까지 소속기관 인사담당 통보 ○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, 복귀 시 원소속 복귀 원칙 단, 본인 희망시 TM을 통한 이동가능 ○ 휴직기간 중 의무사항 불이행시 수준별 인사조치 ○ 휴직기간의 인사평가 등은 리프레시 휴직과 동일 - 단, 휴직기간 중에는 승격 없음 ○ 휴직기간 중 의원면직, 명예퇴직 가능(단, 전직지원휴직 미부여) - 평균임금산정은 휴직 전 정상 근무시의 지급 금액 기준 ○ 유급 휴직기간은 재직자와 동일한 복지 지원
시행시기	매년 4월, 10월 중(2회 시행)